

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5. 19
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 위원장

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
 제2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출석일시 : 2003. 6. 11. ~ 6. 12. (2일간)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·
 답변 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
 공무원 중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장, 본부장, 중평출장소장
 이상 간부공무원